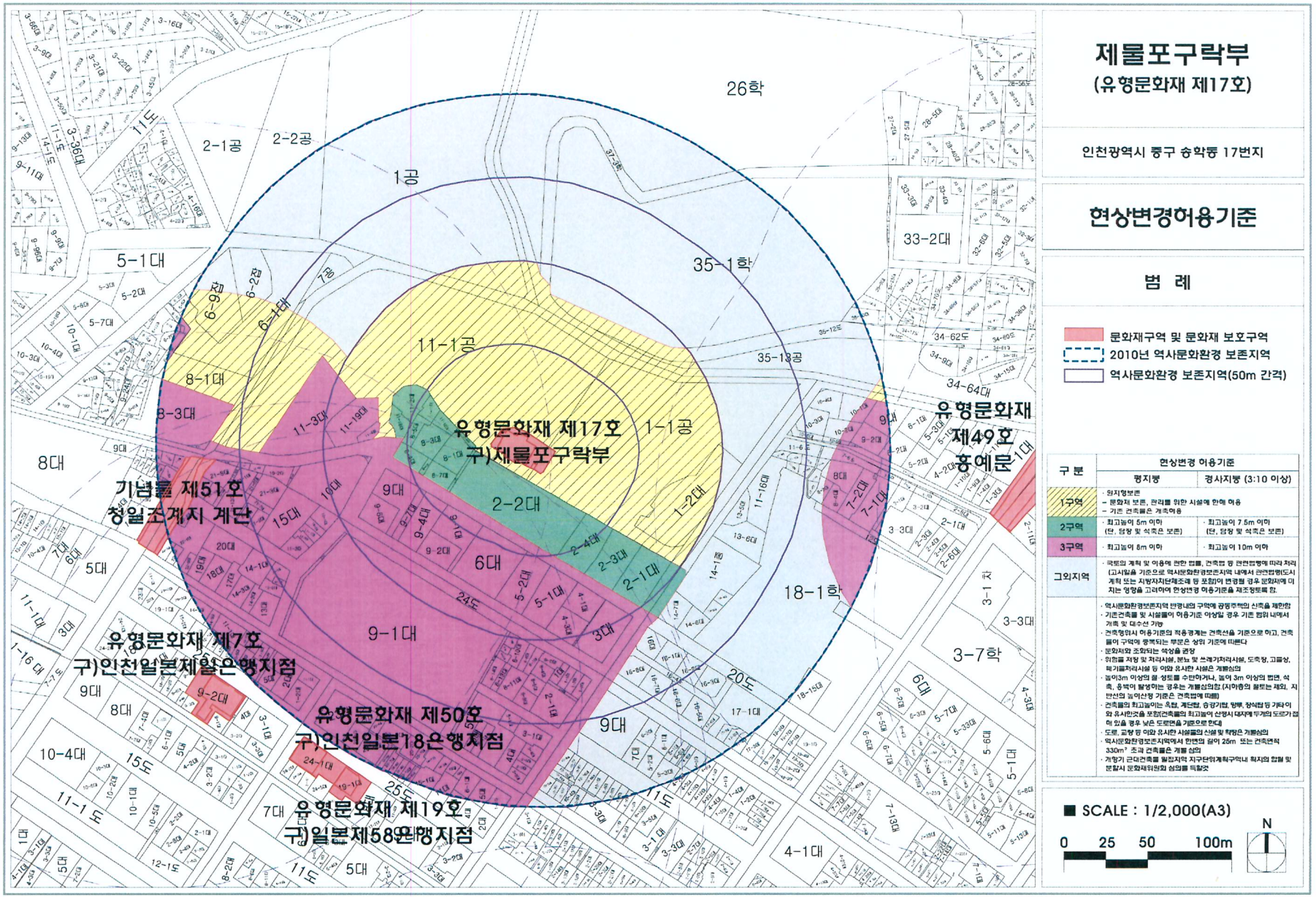
유형문화재 제17호
구)제물포구락부
기념물 제51호
청일조계지 계단
유형문화재 제7호
구)인천일본제일은행지점
유형문화재 제50호
구)인천일본18은행지점
유형문화재 제19호
구)일본제58은행지점
유형문화재
제49호
홍예문
26학
35-1학
18-1학
3-7학
1공
2-1공
2-2공
11-1공
1-1공
1-2대
2-2대
2-1대
9-1대
5-1대
8-1대
8-3대
33-2대
34-64대
3-1 차
3-3대
4-1대
5-1대
24도
25도
20도
15도
11도
11-1 도
제물포구락부
(유형문화재 제17호)
인천광역시 중구 송학동 17번지
현상변경허용기준
범 례
문화재구역 및 문화재 보호구역
2010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
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(50m 간격)
구 분
현상변경 허용기준
평지붕
경사지붕 (3:10 이상)
1구역
· 원지형보존
– 문화재 보존, 관리를 위한 시설에 한해 허용
– 기존 건축물은 계속허용
2구역
· 최고높이 5m 이하 (단, 담장 및 석축은 보존)
· 최고높이 7.5m 이하 (단, 담장 및 석축은 보존)
3구역
· 최고높이 8m 이하
· 최고높이 10m 이하
그외지역
·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,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 (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에서 관련법령(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)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.
·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반경내의 구역에 공동주택의 신축을 제한함
· 기존건축물 및 시설물이 허용기준 약상입 경우 기존 범위 내에서 개축 및 대수선 가능
· 건축행위시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, 건축물이 구역에 중복되는 부분은 상위 기준에 따른다
· 문화재와 조화되는 색상을 권장
·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, 도축장, 고물상,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계불심의
· 높이3m 이상의 옹·성토를 수반하거나, 높이 3m 이상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계불심의함 (지하층의 물토는 제외,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)
·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 등 기타이와 유사한것을 포함(건축물의 최고높이 산정시 대지에 두개의 도로가 접해 있을 경우 넓은 도로면을 기준으로 한다)
·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계불심의
·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서 한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m² 초과 건축물은 계불 심의
· 개항기 근대건축물 일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확지의 합필 및 분할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득할것
■ SCALE : 1/2,000(A3)
0 25 50 100m
N